

행정처분기준(제69조의6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.
- 다.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- 1)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 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- 라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마.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31조의4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
2. 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	법 제31조의4 제1항제2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3. 법 제31조의3제1호부	법 제31조의	등록취소		

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	4 제1항제3호			
4.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의 4 제1항제4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5.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, 그 밖의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	법 제31조의 4 제1항제5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6.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31조의 4 제1항제6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7.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	법 제31조의 4 제1항제6호	등록취소		